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인력 교육 신청 안내문

1. 교육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화학적·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 ‘17년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법 신설)
- 이에, 지정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교육’을 일반검진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2항 >

-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¹⁾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일반검진기관²⁾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가능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속하는 시 제외
-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및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3조(유효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제97조제2항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유효함

2. 교육 일정

- 일 시 : ‘21. 3. 31(수) 13:00~17:00(4시간)
- 장 소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 신청인원 : 20명*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하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의사만 신청 가능

- ❖ 신청인원(20명)은 온라인 신청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되며, 교육 인원 제한으로 신청하지 못한 건강검진기관은 (덧붙임 4) 수요 조사 양식을 작성하여 공단 담당자 이메일(kthkyj1208@kosha.or.kr) 또는 팩스(052-703-0395) 송부
- ☞ 교육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교육 과정 개설 여부 결정

3. 교육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1. 3. 18(목) 오전 10시 ~ 3. 26(금) 18시까지
-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osha.or.kr>)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덧붙임 2 참조)

교육 안내	교육 신청	교육 참석
○ 기간 : 교육일 2주전까지 ○ 대상 : 지정요건 완화 기준 충족 일반건강검진 기관 및 기존 야특기관	○ 기간 : 교육일 2주전 부터 교육 3일전까지 ○ 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교육 신청	○ 교육 시작과 종료 시 참석자 신분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지참 필수
공단 홈페이지 및 우편발송	인터넷 신청	수료증 당일 발급

- ※ 교육 신청은 선착순 접수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해당 교육은 유료로 운영 (약 22,000원/인)

4. 교육 내용

- 고용노동부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반영하여 4시간 실시

구분	교육 과목	시간
1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자건강진단제도	1시간
2	특수건강진단 원리의 이해: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업무관련성과 적합성	1시간
3	야간작업의 건강영향 : 최신지견과 문진 및 설문지 이해	1시간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무 : 야간작업 문진과 결과 판정	1시간
합 계		4시간

5. 대상 지역

시·도	신청가능 지역('21.1.18. 기준)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양평군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u>제외한 시·군</u>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충청북도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보은군 <u>제외한 군</u>
충청남도	논산시,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홍성군 <u>제외한 시·군</u>
전라남도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화순군 <u>제외한 시·군</u>
전라북도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u>제외한 시·군</u>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포항시, 안동시 <u>제외한 시·군</u>
경상남도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u>제외한 시·군</u>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주특별자치시	서귀포시

-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는 가능지역이 없으며, 지정 교육 신청 시 해당 지역에 시행규칙 제97조제1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있는지 확인 필요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신청 방법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교육 이수 이후 특수건강진단 지정신청서(덧붙임3)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① 일반검진기관 지정서 및 일반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료 면허증은 제외)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③ 소속 의사가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④ 최초 1년간의 건강진단사업계획서

7. 기타 사항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을 위해 기관별 필수 인력(의사)만 참석
- 신청 인원(20명) 제한으로 교육 신청을 하지 못한 건강검진기관의 경우, 수요 조사 양식(덧붙임4)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21.3.31까지)
 -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교육 과정 추가 개설 여부 결정
-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현장 확인)

※ 기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으나, 해당 교육 이수자(의사)가 변경된 경우, 현재 소속 의사가 추가로 교육 이수 필요

- 교육 참석 시, 교육 참석자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기본 수칙 준수 협조
- 교육 관련 문의
 - 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총괄팀 김태환 과장(052-703-0784)

교육 장소 (약도)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교통편
 1. 울산역(KTX)에서 교육원까지 오시는 길
 - 리무진버스 : 5005번 승차 → 안전보건공단·동서발전 정류장 하차(소요시간 35분)
 2. 울산공항에서 교육원까지 오시는 길
 - 버스 : 422번(소요시간 50분)
 3. 울산 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교육원까지 오시는 길
 - 버스 : 127번(외환은행 앞에서 승차) → 북정아파트 정류장 하차(소요시간 30분)

※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교육 신청 방법

1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http://edu.kosh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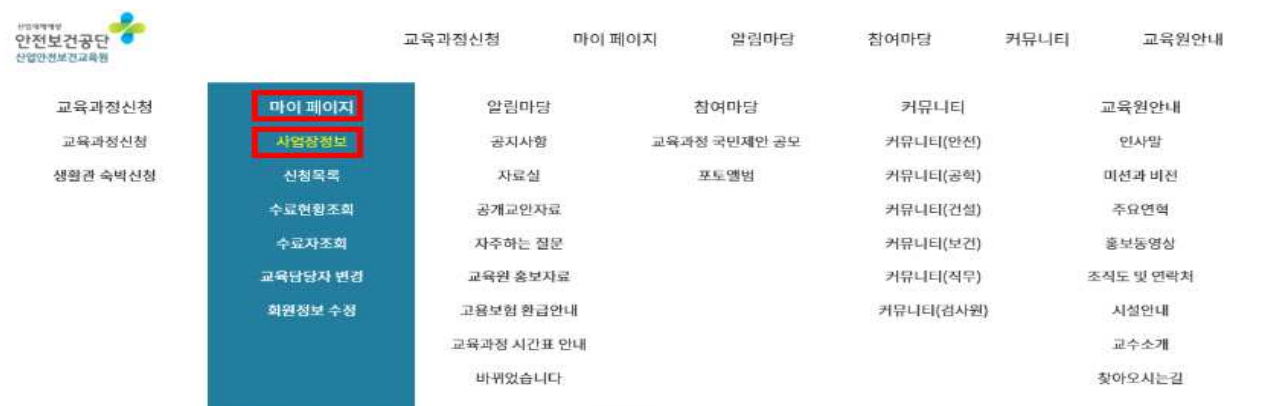


2 교육원 회원 가입 ①가입 안내→②약관동의→③회원정보 입력→④가입 완료

- 교육 신청 기관의 교육담당자를 선정하여 교육원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정보 및 교육담당자 정보 입력

- 회원 가입 후 「마이페이지」의 「사업장 정보」를 선택하여 다음 사항을 입력합니다.



- ① 사업장 정보(사업장관리번호 선택 시 고용보험수급 사업장으로 선택)
- ② 전자계산서 정보*, ③ 교육담당자 정보, ④ 환급계좌*

* 동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 비대상이나, 추후 다른 교육 신청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및 환급계좌 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이오니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바와 같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과정 신청

- 「교육과정신청」의 「교육과정신청」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과정 조회

- ① 교육과정 조회 : 「교육과정보기」에서 “특정 교육”을 선택 후 조회하거나, “과정명”에 직접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교육과정 선택 : “아간직업 특수건강진단 지정교육”의 「기능」을 클릭합니다.

교육과정신청

교육과정보기		교육일정보기	
교육년도	2020 년	한급여부	모두
교육구분	☐ 모두 ☐ 성능검사교육 ☐ 전문화교육(건설안전분야) ☐ 전문화교육(산업보건분야) ☐ 전문화교육(안전공학분야) ☐ 전문화교육(안전관리분야) ☐ 직무교육 ☒ 특정교육	신청여부	모두
과정명	아간	표시개수	10 개

- ③ 교육일정 선택 : 참석희망 교육 일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선택 불가
- ④ 교육인원 선택 : 실제 교육 참석 인원(의사)을 정확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⑤ 수강생 정보 입력 : 이름, 직책(의사),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당일 신분 확인 시 상이한 경우 불참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교육신청 결과 확인 및 결제

- 결제방법을 가상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선택 후 교육비 결제 진행
- 결제완료 여부는 「마이페이지」→「신청목록」에서 확인 가능

(덧붙임 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정신청서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안전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업무지역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6.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제2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 (해당 기관의 인력기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향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검토	결 재	시 행	지정 통보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부서	장관·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교육 수요 조사

우리 기관에서는 '21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교육 신청 마감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추가 교육을 희망하오니 교육 수요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기 관 명 :

☐ 교육 희망 인원(의사) : 명

☐ 기관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 제출기한 : 2021. 3. 31(수)까지
- ❖ 제출방법 : 공단 담당자 이메일(kthkyj1208@kosha.or.kr) 또는 팩스(052-703-0395)
- ※ 수요조사 결과 제출 후 반드시 공단 담당자(김태환 과장) 유선연락(052-703-0784)